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584호

2007년 6월 19일 화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3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 22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4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살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문화공보과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33
-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9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60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61
-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5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76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7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을 둔다.

제4조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19.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20.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21. 자유수호 주민제도
22. 고시·공고·공보발간에 관한 업무
23. 구보(구청신문) 발간·배부
24.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5. 기타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재난관리과를 둔다.

제6조제2항중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30호부터 제64호까지”를 “제27호부터 제61호까지”로 하며, “제62호부터 제7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63.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64.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6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66. 기반체제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67.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68.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69.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70. 비상대책 업무
71.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보건과, 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0호부터 제85호까지”를 삭제하며, “제86호부터 제94호까지”를 “제80호부터 제88호까지”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시관리국) ①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를 둔다.

제8조제2항 중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55호부터 제61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3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11호부터 제52호까지”로 하며, “제53호부터 제5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주택건설촉진법 중 전기분야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54. 가로등, 보안등, 육교 등, 터널 등의 시설 및 유지관리
55.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및 영선공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홍보실,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인천광역시 서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실과별 구분란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하고, 별표3 실과별구분란 중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주민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하며,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하고, “청소행정과”의 위임사무 중 “1”을 “환경보전과”로 하고, “2부터 3까지”를 “1부터 2까지”로 하며, “지역경제과”의 위임사무 중 “10부터 19까지”를 “기업지원과”의 “1부터 10까지”로 하며, “건축허가과”를 “건축과”로 하고, “건축허가과의 위임사무 중 “10”을 “녹지경관과”의 “1”로 하며, “도시개발과”의 위임사무 중 “1”을 “녹지경관과”의 “2”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서구행정법규상달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무의회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예술진흥담당”을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⑮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청소년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한다.
- ⑯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⑰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⑱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제4조제6항 중 “예술진흥담당”을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 ⑳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센터장”으로 한다.
- ㉑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주택담당”을 “주택허가담당”으로 한다.
- ㉒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지역협력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 ㉓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5항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6항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 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 ㉕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노인복지담당”을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 ㉖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조제3항 중 “서비스지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758”를 “756”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중 “17”을 “19”로 한다.
별지를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10호, 제814호, 제858호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한 정원 24명의 존속기한은 폐지한다.

【별표】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보건 지소	출장소	동
총 계	775	482	19	42	18	39	175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683	425	13	38	18	35	154
부구청장(3급)	1	1					
4 급	5	3	1	1			
5 급	47	22	2	4	1	1	17
6 급	140	102	3	6	3	9	17
7 급	193	117	3	8	5	12	48
8 급	206	134	3	10	6	9	44
9 급	91	46	1	9	3	4	28
별 정 직 계	2	2					
6 급 상 당	1	1					
7 급 상 당	1	1					
기 능 직 계	89	54	6	4		4	21
기 능 6 급	2	2					
기 능 7 급	5	5					
기 능 8 급	11	11					
기 능 9 급	27	19	3	1			4
기 능 1 0 급	44	17	3	3		4	17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881호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 중 “2인” 을 “3인”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 업무추진 관련 담당공무원의 검찰·경찰 소환시 조력 및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사범 제외)

제4조 중 “1년” 을 “2년” 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과정 중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임한 소송사건” 을 “수임한 소송사건 및 제3조제1항 제4호의 선임” 으로 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는 당해 상급심부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내 용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선임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700,000	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전부승소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00,000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00,000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500,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000,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3,500,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000,000	
	5억원이상	4,500,000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기 타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고문변호사 수 당		200,000원 이내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봄.

2.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